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102
----------	--------

제출년월일 : 2025. 8.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춤 허용업소 재지정 시 소방·전기 안전서류의 발급 곤란을 해소하고, 지정제한 해제에 따른 시장 혼탁을 예방하기 위해 대체서류 인정, 자문절차 도입, 행정처분 기준 조정 및 안전기준 구체화 등을 통해 춤 허용업소 지정제도의 실효성과 공공안전 대응력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출 서류 변경(안 제6조)

나. 지정 유효기간 변경(안 제6조)

다. 신규 지정 시 지정 자문절차 도입(안 제7조의 2)

라. 비상구 상시 개방 적용 범위 확대(안 제9조)

마. 지정취소 기준 조정 및 신설(안 제12조)

바. 불이익 처분 시 의견 청취를 통한 청문 절차 도입(안 제13조)

사. 문장 구조 정비(안 제1 ~ 12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1) 식품의약품안전처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참고 자치법규(안)」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5. 7. 10.~2025. 7. 30. (제출된 의견 없음)
- 2)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원안 동의
- 3)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4)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

[성별영향평가결과]

관계 법령	「양성평등기본법」
개선의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u>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함.</u> - 이에 따라 지정자문위원회가 성별 균형을 갖추고 운영될 수 있도록,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u> 단서 조항을 제7조의2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위생과 의견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4조는 “이 조례는 구에 설치되는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u>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을 구성하여야 하므로</u>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을 불수용하기로 함.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간 등을 정하는 것”을 “허용시간 등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마포구에 신고 된”을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고된”으로,
“내에”를 “안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내에서”를 “안에서”로, “내에 객실”을
“안에 객실”로, “탁자,”를 “탁자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춤 허용업소의 지정신청”)을 “(춤 허용업소의 지정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 하고자”를 “신청하고자”로,
“신청하여야”를 “제출하여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지정의 유효기간은”을 “지정 및 제6조에 따른 재지정의 유효
기간은 각각”으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구청장이 제3호 및 제4호의 발급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서류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용업소”를 “허용업소로”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지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신규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춤 허용업소 지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실무적 검토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며, 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 신규 지정 신청 업소의 적정성 여부

2. 업소의 위치, 위생관리, 안전성, 공공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춤 허용업소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생, 안전,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의 전문가, 주민대표 또는 지역사회 인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자문은 신규지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재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문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중 “**영업장내**”를 “**영업장 안**”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있을**”을 “**있어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을 “**영업장 안 입장인원을 객석 면적**”으로,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업장에 안전요원을 고정**”을 “**영업장 안에 안전요원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고정배치”를 각각 “배치”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객석방향”을 “객석 방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내에 분산비치하고”를 “안에 분산비치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영업장내”를 “영업장 안”으로 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춤 허용업소가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식품위생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6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등으로 공공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영업자는 지체 없이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청문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과 <u>시간</u> 등을 <u>정하는 것</u> 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u>허용시간</u> 등을
			<u>규정함</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
1.	“춤 허용업소”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u>내</u> 에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허용한 업소를 말한다.	1.	-----	<u>마</u>
			-----	<u>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신고</u>
			-----	<u>된 -- 안에</u> -----
			-----	-----
			-----	-----
			-----	-----.
2.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이란 영업장 <u>내에서</u> 손님들이 별도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을 설치 또는 제공하지 아니하는 장소로, 영업장 <u>내</u> 에 <u>객실</u> , 조리장, 화장실, 창고, 출입구, 비상구, 무대시설 등을 제외하고, 손님들이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u>탁자</u> , 의자 등을 설치한 곳(탁자	2.	-----	-----
			-----	<u>안에서</u> -----
			-----	-----
			-----	-----
			-----	<u>안에</u> <u>객실</u> ---
			-----	-----
			-----	-----
			-----	<u>탁자와</u> -----

와 탁자 사이의 이동통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출 허용업소의 지정신청) ①
영업자가 출 허용업소의 지정을
신청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생략)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출 허용업소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출 허용업소로 재지정을 받으
려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
청장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
다. <단서 신설>

1. ~ 5. (생략)

<신설>

③ (생략)

제7조(지정 등 제한) 구청장은 다음

-----.

제5조(출 허용업소의 지정 신청) ①

신청하고자 -----

--- 제출하여야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정 유효기간 및 재지정 신청) ① -----
지정 및 제6조에 따른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각각 -----
-- 3년-----.

② -----

-----.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구청장이
제3호 및 제4호의 발급 관계기관
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서류로 이
를 갈음할 수 있다.

1. ~ 5. (현행과 같음)

6. 영업장 평면도(탁자, 의자, 세부
배치 평면도) 1부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정 등 제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축 허용업소 지정(재지정을 포함한다)하지 않을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 허용업소 -----
-----.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지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축 허용업소의 신규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축 허용업소 지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행정 내부의 실무적 검토를 위한 자문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며, 위원회의 자문 결과는 신규 지정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1. 신규 지정 신청 업소의 적정성 여부

2. 업소의 위치, 위생관리, 안전성, 공공질서 유지 등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구청장이 축 허용업소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생, 안전, 도시계획, 문화·관광 등의 전문가, 주민대표 또

제9조(출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① 출 허용업소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3의2. 영업자는 매월 안전점검의 날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를 사용하여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영업장내 공개된 장소에 비치할 것

4. (생략)

5. 비상구는 상시 개방되어 있을 것

는 지역사회 인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 위원회의 자문은 신규지정에 한하여 적용하며, 재지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자문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출 허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

----- 영업장 안 -----

4. (현행과 같음)

5. ----- 있어
야 하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지 말 -

6. 영업장내 입장인원을 객석면적
1m²당 1명으로 제한 할 것

7.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영업
장에 안전요원을 고정 배치할 것

가. 영업장의 지상층 : 면적 100
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100m² 초과할 때마다 1명
씩 추가 배치

나. 영업장의 지하층 : 면적 66
m² 이하는 1명 이상 고정배치,
면적 66m² 초과할 때마다 1명
씩 추가 배치

7의2. (생략)

8. 정전이 있을 때 자동으로 켜지
는 비상조명등을 출입구와 비상
구에 각각 2개, 객석방향에 4개
이상 설치할 것

9. (생략)

10. 화재용 방독면 또는 휴대용 방
독면을 업소 내에 분산 비치하고,
벽면 3m당 2개씩 설치할 것

11. 용량 3.3kg 소화기를 영업장내
벽면 5m당 1개씩 설치할 것

12. · 13. (생략)

제12조(행정처분 등) 축 허용업소가
제9조에서 규정된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식품위생

6. 영업장 안 입장 인원을 객석 면
적 ----- 제한할 ---

7. ----- 영업
장 안에 안전요원을 -----

가. -----

----- 배치-----

나. -----

----- 배치-----

7의2. (현행과 같음)

8. -----

----- 객석 방향-----

9. (현행과 같음)

10. -----

----- 안에 분산 비치하고-

11. ----- 영업장 안

12. · 13.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정처분 등) ① 축 허용업소
가 제9조에 따른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였을 때 「식품위생법」에

법」에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5호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차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취소를 받은 영업자는 즉시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따른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고, 개별 행정처분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II.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6호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등으로 공공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춤 허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이 취소된 영업자는 지체 없이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등) 구청장은 춤 허용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사전통지 및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조례 목적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보건소 위생과 황명진
연 락 처	02-3153-9192